

의안번호	제 130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2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2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14.11.19. 「정부조직법」 일부개정으로 부처명칭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(제6조의2)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
(안 제4조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7조)
-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신설
-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사유 및 기피신청, 회피 (안 제6조의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, 제17조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
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
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~② (생략)</p> <p>③ 도지사는 <u>행정안전부장관</u>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행정자치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6조의2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<u>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u></p> <p><u>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u></p>

관련법령

□ 국가정보화기본법

제4조(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,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지역정보화조례

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되,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
 2.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
 3.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

4.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·활용
5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
6.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
7.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
8. 정보격차 해소, 인터넷 중독 예방·해소
9. 재원의 조달 및 운용
10.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“웹표준”을 준수하여야 한다.